제2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1.18.)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 채 환]

목 차

1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안	1
2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7
3	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계안	12

의안번호 제2019 - 4호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 4.

나. 제 출 자 : 이홍희, 김향란, 박수자, 신재화, 이재운, 최정환,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권재경, 김태경

다. 회부일자 : 2019. 1. 7.

2. 개정이유

O 거창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변경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를 변경함.(제 3조 제2항 제2호)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복지국,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를 변경함.(제 3조 제2항 제3호)
 -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거창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19. 1. 10. ~ 1. 15.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O 본 조례안은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거창군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변경하는 것으로
- O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와 제120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거창군 행정기구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담당관·과장·소장 직급 등) 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읍장·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

제3조(담당관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군수 소속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둔다.

제4조(국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을 둔다. 제5조(행정복지국) ① <u>행정복지국에 행정과, 미래전략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u>를 둔다.

-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 1. 조직·인사 운영, 직원 복무·후생복지, 대외협력, 정보전산 등 행정에 관한 사항
- 2. 군 현안·역점 사항 추진, 기업지원, 승강기산업 육성, 투자유치 등 미래전략에 관한 사항
- 3. 인구정책, 교육진흥, 평생학습, 청소년 보호육성, 도서관 관리·운영 등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
- 4. 민원행정, 지적민원, 새주소사업, 식품·공중위생, 지적재조사 등 민원에 관한 사항
- 5. 지방세 부과, 경리·계약, 세입관리, 공유재산관리, 개별 주택·공시지가 등 재무에 관한 사항
- 6. 문화예술·축제, 관광정책, 문화재보존, 박물관·수승대 등 문화관광에 관한 사항
- 7. 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8.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아동·보육 등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경제산업국) ① <u>경제산업국에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u>를 둔다.

-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 1. 시장·경제,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에너지정책, 교통행정·운수 등 경제교통에 관한 사항
- 2. 재난안전관리정책, 재난대응총괄, 재해복구, 안전점검, 민방위, 통신· CCTV 관제 등 안전에 관한 사항
- 3. 산림사업, 화강석 육성, 산림보호, 공원·녹지 조성관리, 항노화 등 산림에 관한 사항
- 4. 환경정책, 환경보존, 폐기물 관리, 수질·토양 개선, 자연환경보전, 야생동물 보호, 창포원 운영 등 환경에 관한 사항
- 5. 건설행정, 농업기반조성, 하천, 도로 등 건설에 관한 사항
- 6.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건축 사업·행정, 건축 허가·신고 등 도시건축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농업기술센터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 조에 따라 농정,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한다.

- ② 농업기술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에 둔다.
- ③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행복농촌과를 둔다.

제8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 1. 농업정책, 농지 보존·이용에 관한 사항
- 2. 농촌지도사업, 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
- 3. 축산행정, 축산기술 지도·보급 등에 관한 사항
- 4. 가축질병, 방역 등에 관한 사항
- 5. 농업 기계화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등에 관한 사항

- 6. 식량작물, 농작물 재해 등에 관한 사항
- 7. 원예, 특용작물 등의 생산·재배·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 8. 과수재배 신기술 보급, 과수 시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9.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 10. 기술 벤처농업, 특화작물에 관한 기술개발·지도에 관한 사항
- 11. 농촌진흥,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항
- 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
- 13. 농산물 수출과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 14.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사항
- 15. 귀농, 귀촌에 관한 사항
- 16. 학교급식, 로컬푸드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17. 그 밖에 농업·농촌 발전, 시험연구, 농촌진흥에 관한 사항

제2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 <u>보건소</u>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소장 등) 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과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의 소관사무를 총괄 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사업소

제1절 수도사업소

제1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상수도와 하수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수도사업소를 둔다.

② 수도사업소는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에 둔다.

제14조(소장) 수도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수도사업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 1. 상수도·하수도 공기업 경영, 상수도·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2.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 3.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2절 체육시설사업소

제16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체육시설사업소를 둔다.

② 체육시설사업소는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에 둔다.

제17조(소장) 체육시설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소관사무) 체육시설사업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 1. 스포츠레저 정책수립·활성화
- 2. 스포츠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3.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3절 거창사건사업소

제19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u>거창사건사업소</u>를 둔다.

② 거창사건사업소는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2924에 둔다.

제20조(소장) 거창사건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소관사무) 거창사건사업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 1. 거창사건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 2. 거창사건희생자 묘역과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제2019 - 5호

-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 4.

나. 제 출 자 : 이홍희, 김향란, 박수자, 신재화, 이재운, 최정환,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권재경, 김태경

다. 회부일자 : 2019. 1. 7.

2. 개정이유

- O「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을 반영하고,
- O 여비지급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맡게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월정수당 금액을 변경함.(안 제6조)
 - 2019년 1,798,910원
 -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워보수인상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 나. 여비지급 기준을 변경함.(안 제7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금액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나. 예산조치 : 시행시 소요예산 확보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 반영

라.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19. 1. 10. ~ 1. 15.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O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기준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61호, 2018. 10. 30, 일부개정]

-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
 - 1. 의정활동비: 별표 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 2. 여비: 별표 5에 따른 여비 지급범위에서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 3. 월정수당: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거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결정결과」 2018.11.23.

- 1. 의정활동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 별표 4에 따른 최대금액
- 2. 여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 별표 5에 따른 금액
- 3. 월정수당
 - 가. 2018년 공무원보수인상률 2.6퍼센트 적용하여 인상
 - 나. 2020년~2022년 : 매년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반영하여 인상

[별표 4]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 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별표 5] <개정 2018. 1. 9.>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2호 관련)

1. 국내 여비

구분	준용
시 · 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 중구된 역미 표정」 필표 2 제1호

비고

-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 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 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구분	준용
시·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부의장	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림에 대한 왕 공운임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그 밖의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구분	준용
시・도의회 의장・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3호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부의장	' 6 구천 역미 II 경」 필표 4 제4호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비고: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의안번호 제2019 - 13호

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 4.

나. 제 출 자 : 이홍희, 김향란, 박수자, 신재화, 이재운, 최정환,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권재경, 김태경

다. 회부일자 : 2019. 1. 7.

2. 개정이유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개정(시행일 2019.1.1.)으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을 변경함(안 제2조)
 - 보조기관중 국장·담당관·과장
 -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본청 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거창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19. 1. 10. ~ 1. 15.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O 본 조례안은 「거창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맞게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u>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u>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 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 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 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 치할 수 있다.
- 제115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17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 · 행정동을 말한다.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와 제120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담당관·과장·소장 직급 등) 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읍장·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

제3조(담당관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군수 소속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둔다.

제4조(국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을 둔다. 제5조(행정복지국) ① <u>행정복지국에 행정과, 미래전략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u>를 둔다.

-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 1. 조직·인사 운영, 직원 복무·후생복지, 대외협력, 정보전산 등 행정에 관한 사항
- 2. 군 현안·역점 사항 추진, 기업지원, 승강기산업 육성, 투자유치 등 미래전략에 관한 사항
- 3. 인구정책, 교육진흥, 평생학습, 청소년 보호육성, 도서관 관리·운영 등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
- 4. 민원행정, 지적민원, 새주소사업, 식품·공중위생, 지적재조사 등 민원에 관한 사항
- 5. 지방세 부과, 경리·계약, 세입관리, 공유재산관리, 개별 주택·공시지가 등 재무에 관한 사항
- 6. 문화예술·축제, 관광정책, 문화재보존, 박물관·수승대 등 문화관광에 관한 사항
- 7. 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 8.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아동·보육 등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경제산업국) ① <u>경제산업국에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u> 건설과, 도시건축과를 둔다.

-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 1. 시장·경제,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에너지정책, 교통행정·운수 등 경제교통에 관한 사항
- 2. 재난안전관리정책, 재난대응총괄, 재해복구, 안전점검, 민방위, 통신· CCTV

관제 등 안전에 관한 사항

- 3. 산림사업, 화강석 육성, 산림보호, 공원·녹지 조성관리, 항노화 등 산림에 관한 사항
- 4. 환경정책, 환경보존, 폐기물 관리, 수질·토양 개선, 자연환경보전, 야생동물 보호, 창포원 운영 등 환경에 관한 사항
- 5. 건설행정, 농업기반조성, 하천, 도로 등 건설에 관한 사항
- 6.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건축 사업·행정, 건축 허가·신고 등 도시건축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농업기술센터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정,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군에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한다.

- ② 농업기술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에 둔다.
- ③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행복농촌과를 둔다.

제8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 1. 농업정책, 농지 보존·이용에 관한 사항
- 2. 농촌지도사업, 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
- 3. 축산행정, 축산기술 지도·보급 등에 관한 사항
- 4. 가축질병, 방역 등에 관한 사항
- 5. 농업 기계화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등에 관한 사항
- 6. 식량작물, 농작물 재해 등에 관한 사항
- 7. 원예, 특용작물 등의 생산·재배·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 8. 과수재배 신기술 보급, 과수 시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9.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 10. 기술 벤처농업, 특화작물에 관한 기술개발·지도에 관한 사항
- 11. 농촌진흥,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항
- 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

- 13. 농산물 수출과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 14.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사항
- 15. 귀농. 귀촌에 관한 사항
- 16. 학교급식, 로컬푸드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17. 그 밖에 농업·농촌 발전, 시험연구, 농촌진흥에 관한 사항

제2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 <u>보건소</u>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소장 등) 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과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의 소관사무를 총괄 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사업소

제1절 수도사업소

제1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상수도와 하수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수도사업소**를 둔다.

② 수도사업소는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에 둔다.

제14조(소장) 수도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수도사업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 1. 상수도·하수도 공기업 경영, 상수도·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2.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2절 체육시설사업소

제16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체육시설사업소를 둔다.

② 체육시설사업소는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에 둔다.

제17조(소장) 체육시설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소관사무) 체육시설사업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 1. 스포츠레저 정책수립·활성화
- 2. 스포츠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3.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3절 거창사건사업소

제19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u>거창사건사업소</u>를 둔다.

② 거창사건사업소는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2924에 둔다.

제20조(소장) 거창사건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소관사무) 거창사건사업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 1. 거창사건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 2. 거창사건희생자 묘역과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